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12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7.

발 의 자 : 김승원 · 김원이 · 박상혁  
강준현 · 민병덕 · 김남근  
김용만 · 윤준병 · 임호선  
이강일 · 최기상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배타적 거래 강요, 경영정보 제공 요구,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앞으로는 배타적 거래 강요, 경영정보 제공 요구,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제1항).



법률 제 호

##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9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제13조를 위반하여 <u>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자</u></p> <p>2.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<u>납품업자등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한 자</u></p> <p>3.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<u>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,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39조(벌칙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1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2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